

## 관련성과

## 서·울·특·별·시
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범부 02124-1118

시행일자 1992. 07. 15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자치구 조례·규칙 등 보고 출수

선 결	과장	지 시
집 수	일자 시간	92.7.16
	번호	1387
	처리과	
	담당자	주인희

1. 범부 02124-1084(91. 7. 8)호 및 범부 02124-1798(91. 12. 6)호에 관련됨  
 2.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치구조례·규칙 중 내부부장관에게 보고한  
 사항을 "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 보고규정" (내부부 훈령 제1027호, 91. 7. 8  
 차 환면대호)으로 시달하였으나, 주관과의 내부부보고 시한준수와 보고과정에 있어 소관  
 중앙부서와 우리시간 법제사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을  
 다음과 같이 재강조 지시하니 시행에 차질 없기 바람.

## 가. 자치구 조례·규칙 내부부 보고

근거 :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내부부 훈령 제1027호

구분 조례 : 특별회개설치조례와 11항목(별첨)

규칙 : 자체 및 정원규칙외 4항목(별첨)

시한 : 접수된 날로부터 2일이내

보고 : 주관과장 → 내부부장관

## 나. 자치구 명령·처분의 취소·정지 사항보고

근거 : 지방자치법 제157조, 동법시행령 제55조

대상 : 자치구 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명령, 처분에 대하여 시장이  
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그 조치결과를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

보고 : 본청주관과장 → 내부부장관

다. 재의와 제소사항 내부부 보고

·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제159조 등법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

· 대상

- 재의 :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치구의 결에 관한 재의요구사항(법제159조)

- 제소 자치구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명령·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취소 또는 청지 처분에 관한 자치구청장의 대법원 소제기 보고사항(법제157조)

자치구의회의 재의결 사안에 대한 자치구청장의 대법원 소제기 보고사항 및 대법원 판결내용 보고사항(법제159조)

· 보고 : 주관과장 → 내부부장관

첨부 : 내부부 훈령 1부. 끝.

## 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서과 1~71.

· 경기 관리실장 겸임

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 보고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1991. 7. 2.

내부부장관 이상연

##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 보고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 중 내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통업부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고대상) 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"라 한다)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내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조례·규칙(개정·폐지를 포함한다)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보고시기 및 내용)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로 부터 받은 보고 중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조례·규칙은 접수 후 2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내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조례 또는 규칙전문 2부.
2. 개정(개정) 이유 및 주요골자 1부.
3. 관령법령 밟훼서 1부.
4. 신구조문대비표(개정시) 1부.
5. 기타 참고사항 1부.

제4조(심사등) ① 제3조의 보고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이 이를 심사한다.

② 제1항의 심사결과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5조(시정조치등) 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재의 또는 시정명령 요구를 받은 시·도지사는 당해 시장·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재의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시장·군수는 자체없이 당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시장·군수가 시·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.

( 三 )

## 내무부장관 지정 시·군 및 자치구 조례·규칙 보고사항